

의안번호	2207326
의 퇴 인	서범수의원
회 답 일	2025.4.1.
추계번호	25B009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8조의2 (계약 등에 관한 부정 행위 금지)	(현 행 조제목)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개정안 조제목) 계약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
2	안 제38조의4제1항 제6호 신설 (불공정행위 및 부정 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함(제1항) 6. 제38조의2 ¹⁾ 에 따른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38조의2 (계약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 미대상: 조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와 관계가 없음
2	안 제38조의4제1항제6호 신설 (불공정행위 및 부정행위의 신고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 즉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업체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38조의4제3항²⁾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증가할 부정행위 신고 건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법 제38조의4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은 2024년 13건 2,500만원임

[표 1]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연도	지급건수	지급액
2022	—	—
2023	—	—
2024	13건	25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